

음주의 폐해 감소를 위한 가격정책의 필요성

The Effectiveness of Tax Policy on Alcohol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건강위해 행태 중 음주는 개인의 신체 및 정신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및 경제활동 등 사회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음주 등의 건강위험이 높은 행태를 줄이고 개인의 건강증진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외부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과 주류에 대한 적극적인 가격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하여 음주의 폐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본 고에서는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재정에의 영향, 조기사망 비용,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비용, 차량손실비 및 재산손실비, 음주관련 화재사고의 재산손실비용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 기존문헌 및 기초통계를 고찰하여 주류에 대한 적극적인 가격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1. 서언

질병으로 인한 조기사망, 의료비 등 질병부담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짐을 안겨주고 있는데, 특히 만성질환으로 인한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¹⁾ 이러한 만성질환 발병은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생활습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건강과 조기사망의 결정요인 중 개인의 행태가 40%를 차지하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준다.²⁾ 따라서,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생활습관을 바꿔 흡연, 음

주, 비만 등과 같은 위험요인을 제거하면 그에 따른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건강위해 행태 중 음주는 개인의 신체 및 정신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및 경제활동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신체적으로는 간경변, 간암 등의 위험요인일 뿐만 아니라 구강암, 후두암, 식도암, 위암, 고혈압 등의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 의료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개인과 가정 및 국가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음주관련 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할 경우 그에 따른 생산인력의 손실과 음주로

1) 신생물(암) 사망률은 10만명당 141.4명, 순환기계 질환은 112.3명으로 제시되고 있음(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결과).

2) Schroeder SA. We can do better: improving the health of the American people, NEJM 2007; 357(12)

인한 결근이나 업무 비효율성 등으로 생산성 손실이 유발된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음주관련 사고 및 범죄, 가족해체,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한편, 음주는 흡연처럼 비음주자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 즉 외부성(extemality)을 지니고 있다. 음주운전사고에 따른 사망 및 손상, 음주에 기인한 사고, 폭력 등이 외부성의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흡연, 음주 등과 같은 건강위험이 높은 행태를 줄이고 개인의 건강증진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외부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위해품목에 대한 적절한 규제정책(비가격정책)과 함께 조세부과 등의 조세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고는 만성질환을 포함한 질병의 주요 건강위해요인인 음주를 주제로 관련 폐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특히 가격정책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

1) 음주에 기인한 의료재정 부담

정영호(2009)³⁾에 따르면 20세 이상의 경우 음주에 기인한 질병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액은 전체 진료비 중 11.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흡연과 비만이 의료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각각 6.6%, 6.0%로 분석되었는데, 음주에 기인한 의료재정 부담이 흡연과 비만의 경우를 더한 것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2) 음주로 인한 조기사망 비용

음주로 인한 조기사망 비용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우선 음주관련 질병으로 인한 조기사망 비용은 사회적 할인율 3% 적용시 2007년도에 약 3조 4백억 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 등 음주관련 사고로 인한 조기사망비용은 약 2천 4백 8십억 원인 것으로 제

표 1. 흡연·음주·비만에 기인한 의료재정 부담(2005년)

(단위: %)

구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계
흡연의 의료재정 부담	2.4	3.3	5.3	7.8	9.0	8.5	6.6
음주의 의료재정 부담	2.1	12.1	28.2	15.0	6.2	1.5	11.4
비만의 의료재정 부담	0.9	2.1	4.9	7.9	9.0	7.4	6.0

자료: 정영호(2009). 흡연, 음주, 비만에 기인한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및 관련품목 조세제도, 한국사회보장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3) 정영호(2009). 흡연, 음주, 비만에 기인한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및 관련품목 조세제도, 한국사회보장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시되고 있다. 따라서, 음주로 인한 질병과 사고로 발생하는 조기사망 비용은 3조 2천 8백 8십억 원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음주로 인한 조기사망 비용(2007년)

(단위: 백만원)

비용 항목	비용
• 음주관련 질병으로 인한 조기사망비용	3,040,279
• 음주관련사고로 인한 조기사망비용	247,539

주: 사회적 할인율 3% 적용
 자료: 정영호(2009. 7). 흡연 및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3) 산업재해 의료비 및 교통사고 비용(보험금)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 부상자의 수는 아래의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2007년도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일 평균 77.9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3.4%에 해당하였으며,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4.5%, 그리고 부상자는 전체의 1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음주관련 비율이 13.8%로 발표되

었다.

이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산업재해 의료비 및 교통사고 비용(보험금)은 2007년도에 각각 1,053억 원과 2,315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4) 차량손실비 및 재산손실비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비율인 13.4%를 적용하여 산출한 음주운전사고에 따른 차량손실비는 약 7,471억원으로 추산되었으며(표 5 참조), 음주관련 사고에 따른 행정비용은 약 338억원으로 계산되었다(표 6 참조).

5) 음주관련 화재사고의 재산손실비용

김광기(2001)⁴⁾에서 제시된 화재사고음주기여율인 0.44를 적용하여 2007년의 음주관련 화재사고에 따른 재산손실비를 계산하면 약 1,093억원으로 분석되었다. 연도별로 비교했을 때 2006년에 비하여 2007년에는 전체 화재사고 재산피해액도 늘었고 음주관련 화재사고 비용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 음주운전 교통사고

연도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건)	1일 평균	점유율(%)	(명)	점유율(%)	(명)	점유율(%)
2007	28,416	77.9	13.4	991	16.1	51,370	15.3
2006	29,990	82.2	14.0	920	14.5	54,255	15.9

자료: 도로교통공단(2008).

4) 김광기 외(2001). 알코올 소비 및 음주관련 폐해 통계지표의 정보화, 인제대학교, 보건복지부.

표 4. 음주관련 사고에 따른 의료비 및 교통사고 보험금(2007년)

(단위: 백만원)

음주관련 산업재해 의료비 ¹⁾	2007년 산재보험요양급여		음주관련 산업재해 의료비	
	763,003		105,294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비용	구분	수	비용 ²⁾	
	사망자	차대사람	194	23,660
		차대차	446	54,394
		차량단독	351	42,808
	부상자	차대사람	2,810	6,052
		차대차	46,210	99,536
		차량단독	2,348	5,057
계	-	231,510		

주: 1) 음주관련 산업재해 의료비 = 산재보험요양급여액 x 13.8%
 2) 2007년 기준 사망자 1인당 보험금 121,961천원 적용
 2007년 기준 부상자 1인당 보험금 2,154천원 적용
 보험금 = 의료비 + 휴업손해 + 상실수익 + 위자료 + 장례비 + 기타금액

자료: 1) 노동부(2008). 2007 산재보험사업연보.
 2) 도로교통공단(2008). '07.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
 3) 도로교통공단(2008). 교통사고 통계분석 2008.
 4) 보험개발원(2008). FY2007 종목적 총괄손해상황(미 발간자료).

표 5. 전체교통사고와 음주운전사고에 따른 차량손실비

(단위: 백만원)

전체교통사고 차량손실비용 ¹⁾ (2007년 기준)	전체교통사고 차량손실비용	5,575,150
음주운전사고 차량손실비용 ²⁾	음주운전사고 차량손실비용	747,070

주: 1) 전체교통사고 차량손실비용 = 차량손해비용 + 대물피해비용
 2) 음주운전사고 차량손실비용 = 전체교통사고 차량손실비용 x 13.4%(2007년도 음주운전사고 점유율)

자료: 1) 도로교통공단(2008). '07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
 2) 도로교통공단(2008). 교통사고 통계분석 2008.

3. 우리나라의 음주 실태

1) 우리나라 성인의 음주율

음주율은 음주량 및 음주 주기에 따라 현음주, 위험음주, 고위험음주로 구분하고 있는데,

아래의 <표 8>을 보면 남성 40대의 11.4%가 고위험음주자로 나타났으며, 위험음주의 경우에는 30대 남성이 41.1%, 그리고 40대 남성이 34.6%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음주관련 사고에 따른 행정비용

구분		명/건수	명/건당 비용(천원)	행정비용 ¹⁾ (백만원)	
교통행정	인적 피해	사망	320	814.8	260
		부상	24,510	676.2	16,573
		물적피해	25,964	47.1	1,222
		소계	-	-	18,057
보험행정	인적 피해	사망	320	752.0	240
		부상	24,510	551.1	13,507
		물적피해	25,964	78.7	2,043
		소계	-	-	15,791
행정비용 총계		-	-	33,848	

주: 1) 행정비용 = 교통 및 보험행정의 명/건수x명/건당비용
 자료: 1) 도로교통공단(2008). 교통사고 통계분석 2008.
 2) 도로교통공단(2008). '07.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

표 7. 음주관련 화재사고에 따른 재산손실비

(단위: 백만원)

연도	화재사고 재산피해액 ¹⁾	화재사고 음주기여율 ²⁾	음주관련 화재사고 비용
2006년	150,792	0.44	66,348
2007년	248,417	0.44	109,303

주: 음주관련 화재사고 비용 = 화재사고 재산피해액 x 화재사고 음주기여율
 자료: 1) 소방방재청(2007). 2006년도 화재발생현황분석.
 소방방재청(2008). 2007년도 화재발생현황분석.
 2) 김광기 외(2001). 알코올 소비 및 음주관련 폐해 통계지표의 정보화, 인제대학교, 보건복지부.

표 8. 음주유형별 · 성별 · 연령별 음주율

(단위: %)

구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현음주	남	63.9	70.9	72.9	70.3	53.8	47.6
	여	48.6	34.0	37.6	27.3	26.2	17.3
위험음주	남	24.5	41.1	34.6	29.4	20.8	13.2
	여	13.8	9.3	12.2	11.3	5.6	0.8
고위험음주	남	7.5	7.8	11.4	9.8	11.2	6.6
	여	3.9	0.9	1.4	1.9	1.0	2.2

주: 1) 현음주 = 연간음주자 중 한 달에 2회 이상의 음주자
 2) 위험음주 = 현음주자 중 위험음주자(소주7잔(남), 소주5잔(여) + 주1회 이상)
 3) 고위험음주 = 위험음주자 중 거의 매일의 음주자(소주7잔(남), 소주5잔(여) + 거의 매일)
 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1차년도(2007)

2) 청소년 음주율

청소년(중·고등학생)의 음주율 통계에 따르면 2007년의 고위험음주율, 위험음주율, 문제음주율 모두 2005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고위험음주율의 경우에는 2005년에 29.7%에서 2007년에는 31.5%로 증가하였고, 문제음주율도 2005년의 28.8%에서 2007년에 42.2%로 13.4%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험음주율 역시 2005년에 비해 2007년에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데, 10대의 음주가 성인시기에 알코올 중독의 가장 주요한 요인임은 널리 알려져 있다. 미국의 National Council On

Alcoholism and Drug Dependence에서 발간한 보고서⁵⁾에 의하면 음주시작 연령이 15세 이하인 경우 21세에 음주를 시작한 음주자보다 4배 정도 알코올 의존도가 높으며, 21세 이전에 음주를 시작한 청소년들의 알코올관련 문제는 2배 정도 높게 제시되고 있다.

4. 주류에 대한 적극적 가격 정책의 필요성

1) 주류업체의 광고선전비

청소년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으나, 특히 주류광고와 판촉 활동이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WHO⁶⁾를

표 9. 청소년 음주율

(단위: %)

연도		2005년			2007년		
구분		고위험 음주율	위험 음주율	문제 음주율	고위험 음주율	위험 음주율	문제 음주율
전체		29.7	44.2	28.8	31.5	46	42.2
성별	남	28.1	37.9	25.8	30.7	42.2	39.8
	여	31.5	51.2	32.3	32.5	51	45.2

주: 1) 고위험 음주율: 현재 음주자 중에서 지난 한 달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과량인 사람의 비율(남자: 소주 1병 이상 음주자, 여자: 소주 5잔 이상 음주자)

2) 위험 음주율: 현재 음주자 중에서 지난 한 달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인 사람의 비율(남자: 소주 4잔 이상 음주자, 여자: 소주 3잔 이상 음주자)

3) 문제 음주율: 현재 음주자 중에서 지난 일 년 동안 음주 후 문제행동(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또는 어울리기 위해 술을 마신 경험, 혼자서 술을 마신 경험,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술을 줄이라는 충고를 들은 경험,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나 자전거 운전할 하거나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나 자동차에 탑승한 경험, 술을 마시고 기억(필름)이 끊긴 경험,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인 경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경험)을 두 가지 이상 경험한 사람의 비율

자료: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2005~2007), 음주관련통계시스템에서 재인용.

5) National Council on Alcoholism and Drug Dependence - NEW JERSEY, Increase State Alcohol Excise Tax, 2003.

비롯한 다수의 연구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광고와 판촉은 청소년들의 음주시기와 음주관련 위해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류업체의 광고선전비는 2008년에 매출액대비 7.3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제조업의 0.69%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주류업체의 광고비는 2000년에 4.93%에서 2008년에 7.36%로 증가하였으며, 비알코올음료의 광고선전비에 비해서도 4%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주류가격과 주류세의 변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각종 폐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방안들은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으나, 주류가격의 인상을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본 고에

서는 주장하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들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류세의 인상이 젊은 층의 음주시기를 늦추고 음주관련 문제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많은 연구결과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⁶⁾ 미국의 16~21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주류세 인상이 음주빈도가 잦은 청소년들에게 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맥주에 부과하는 주류세의 인상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물가지수로 보정한 우리나라의 주류가격 변화추이를 보면, 점차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류가격이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1 참조). 주류가격의 상대적 하락은 알코올 소비량과 음주횟수의 증가를 가져오는데, 특히 청소년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표 10. 우리나라 주류제조업체의 매출액 대비 광고선전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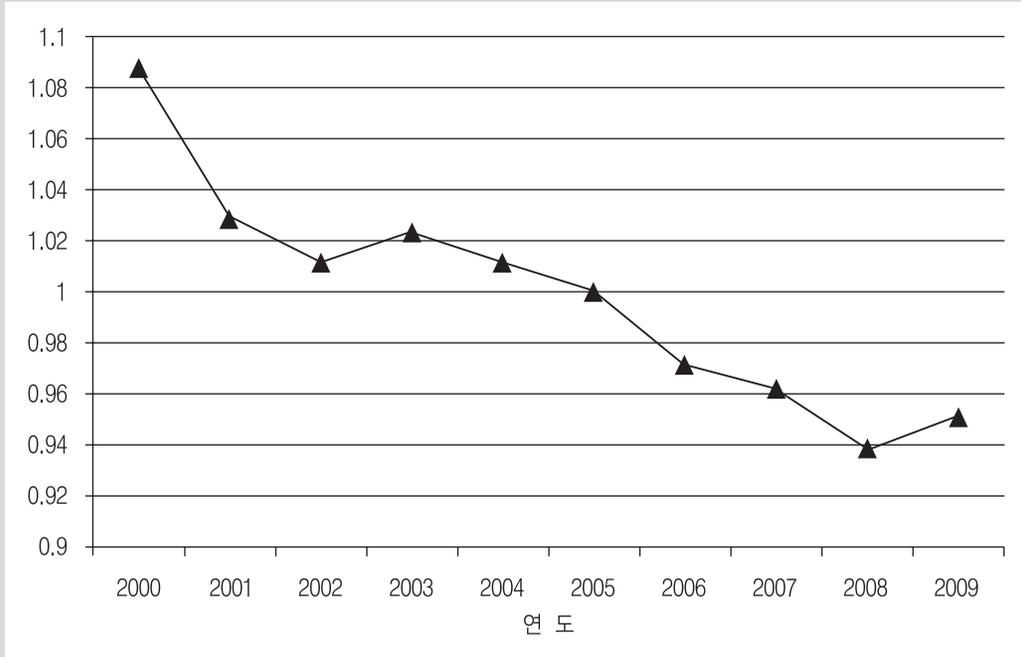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제조업(전체)	0.72	0.79	0.85	0.85	0.70	0.75	0.71	0.70	0.69
주류	4.93	6.41	5.58	5.83	5.84	5.10	7.36	5.62	7.36
비주류 음료	5.25	5.36	5.09	4.84	4.39	3.92	4.34	3.35	3.29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6) WHO, Evidence for the effectiveness and cost-effectiveness of interventions to reduce alcohol-related harm, 2009., CSPI, Alcohol Advertising: Its Impact on Communities, and What Coalitions Can Do To Lessen That Impact, Strategizer 32.

7) Coate and Grossman, "Effects of Alcoholic Beverage Prices and Legal Drinking Ages on Youth Alcohol Use", NBER Working Paper No. 1852, 1986.

그림 1. 전체물가수준으로 보정한 주류가격의 변화



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한편, 다음의 <표 11>은 우리나라 주세율의 변화를 보여주는 데, 2000년 이후에 주세율은 변화가 없거나,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맥주의 경우, 2000년에 115%에서 100%(2004) → 90%(2005) → 80%(2006) → 72%(2007)로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청주도 2004년까지 70% 이었으나 2005년부터 30%로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세율의 불변 또는 감소는 주류가격의 점진적이며 실질적인 하락을 가져와, 알코올 소비의 억제를 통한 알코올 폐해의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 있다.

3) 주류세 인상에 따른 주요 부담계층 및 가구의 부담 정도

다음의 <표 12>에서와 같이 가구의 소비지출 중 주류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0.4%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주세인상으로 인한 가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 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하겠다. 그리고, 주류세 인상은 주로 고위험음주군과 위험음주군(앞에서 제시된 표 8 참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11. 주세율의 변화

(단위: %)

구분		2000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발효주	탁주	5	5	5	5	5
	약주	30	30	30	30	30
	청주	70	70	30	30	30
	맥주	115	100	90	80	72
	과실주	30	30	30	30	30
증류주	증류식 소주	72	72	72	72	72
	희석식 소주	72	72	72	72	72
	위스키	72	72	72	72	72
	브랜드	72	72	72	72	72
	일반증류주	72	72	72	72	72
	리큐르	72	72	72	72	72

자료: '박상원 외(2009). 담배·주류·갬블 재화에 대한 과세 연구: 세율결정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췌하여 수정

표 12. 연간 총 소비지출 중 가구당 주류지출

(단위: 원, %)

연도	명목			실질		
	소비지출	주류지출	비율	소비지출	주류지출	비율
2005년	5,585,992	24,286	0.43	5,590,562	24,275	0.43
2006년	5,814,154	24,919	0.43	5,682,619	25,094	0.44
2007년	6,075,270	16,881	0.28	5,800,838	25,185	0.43
2008년	6,301,392	27,344	0.43	5,760,189	26,558	0.46

- 주: 1) 명목: 물가상승률을 제거했을 때(기준년도 기준)
 2) 실질: 실질적으로 소비한 정도
 3) 소비지출: 실질적으로 소비한 지출만 포함(예: 의료, 식료품, 기타 등등)
 4) 비율: 전체 소비지출 중 주류지출 비율

자료: 음주관련통계시스템

주류에 대한 조세부과에 따른 소득역진성 관련 논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주류를 필수재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조세부과는 주로 고위험음주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 고위험음주자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셋째, 가구지출에서 주류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0.4% 정도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가구소득에 비례해 주류소비 지출액이 증가하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 성명재(2009)⁸⁾는 우리나라 주류소비에 관한 분석을 통

하여 주류 전반에 대한 소비구조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지출액이 증가하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즉, 주류 소비와 소득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주류가격 인상이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어 소득역진성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2009)⁹⁾. 다섯째, 주류에 부과하는 세금이 석유나 담배에 부과하는 조세에 비해 형평적이라고 미국의 CSPI¹⁰⁾가 밝히고 있다.

4) 가격정책의 효과성

주류가격의 인상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음주의 가격탄력도를 분석한 연구결과들을 보면, Gallet(2007)¹¹⁾은 132개의 관련연구 메타분석을 통해 중간값의 가격탄력도가 단기에는 -0.52, 장기에는 -0.82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Wagenaar(2009)¹²⁾는 112개의 관련연구 메타분석을 통해 평균 가격탄력도가 맥주의 경우에는 -0.46, 와인인 -0.69, 그리고 증류주는 -0.80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여타의 관련 기존연구결과를 정리한 내용이 다음의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조세 부과를 통한 주류가격 상승으로 알코올관련 폐해가 감소한다는 광범위하고 일관된 근거가 다수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알코올관련 폐해를 감소시키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정책수단은 조세부과를 통한 가격인상이라 할 수 있다.

5. 주류에 대한 조세정책 방안

1) 조세정책 방향

음주의 폐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주류에 대한 조세정책을 강화하여 주류가격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세율 인상은 물가인상률과 연동하여 주류의 상대가격이나 실질가격의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종가세 위주의 조세정책을 알코올 량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세 성격의 조세정책으로의 전환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조세부과 방식 및 재원의 활용

단기적으로는 주류에 목적세 형태의 건강증

8) 성명재(2009). 외부불경제 품목 소비억제를 위한 정책개편 방안, 외부불경제품목 소비억제를 위한 정책토론회, 조세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에너지경제연구원.

9) 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2007). The Case for Alcohol Excise Tax Increases.

10) CSPI, Alcohol Advertising: Its Impact on Communities, and What Coalitions Can Do To Lessen That Impact, Strategizer 32.

11) Gallet CA(2007). The demand for alcohol: a meta-analysis of elasticities, The Australian Journal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12) Wagenaar AC, Salois MJ, Komor KA(2009). Effects of beverage alcohol price and tax levels on drinking: a meta-analysis of 1003 estimates from 112 studies, Addiction.

표 13. 음주의 가격탄력도

출처	비고	탄력도	주류
Saffer and Dave(2002)	pooled time series, 26개국	-0.19	-
Angulo et al. (2001)	1990-91, 스페인	-1.52 -2.44 -4.65	와인 맥주 고도주(spirits)
Bielinska and Young(2001)	pooled time series, 미국	-2.9	-
Smith(1999)	영국	-0.79 -1.69 -0.86	맥주 와인 고도주(spirits)
Grossman et al. (1997)	미국	-0.29 -0.41 -0.65	중독(addiction)무시 중독(addiction)고려-단기 중독(addiction)고려-장기
Glements et al. (1997)	노르웨이,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0.35 -0.68 -0.98	맥주 와인 고도주(spirits)
Nelson(1997)	미국	-0.16 -0.58 -0.52	맥주 와인 고도주(spirits)
Manning et at. (1995)	미국	음주율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민감하지 않음	-
Kenkel(1993)	-	-0.92 -2.24 -0.74 -0.81	모든 청소년 18~21세 남성 참가자 여성참가자
Leung and Phelps(1993)	15개 문헌검토	-0.3 -1 -1.5	맥주 와인 고도주(spirits)

자료: 정영호 외(2008). 미래사회에 대비한 건강증진 재정정책의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진기금의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많은 재정학자들은 목적세를 부과하면 조성된 재원이 특정한 용도로만 활용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자원배분이 어렵게 되는 경직성을 우려하여 목적세 부과에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음주관리 및 건강증진사

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류에 목적세 성격인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혜원칙 (benefit principle)”¹³⁾에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음주자들은 알코올이 건강에 미치는 해로움으로 인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수혜원칙을 적

용하면 주류에 목적세 성격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류에 부과된 건강증진기금은 예방 및 건강 증진, 그리고 관련 피해를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에 활용하도록 기제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도 알코올 소비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맥주 1캔 당 0.05\$의 연방세를, 그리고 여타 주류에 대해서도 유사한 비율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자원은 알코올 폐해 예방 및 정신건강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는데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Medicaid 지원, 아동과 성인의 면역 및 백신 접종 등의 프로그램에 지원 등이 그 예이다.¹⁴⁾

6. 결론

본 고에서는 건강위해품목 중 주류를 중심으로 관련폐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적극적인 가격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본문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조세 부과를 통한 주류가격 상승으로 알코올관련

폐해가 감소한다는 광범위하고 일관된 근거가 다수 제시되고 있는데, 특히 젊은 층과 고도음주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류가격의 인상을 통해 음주시기를 늦추게 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고도음주자의 주류관련 지출과 소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국은 30년 이상에 걸쳐 인플레이션율과 일치하는 맥주 소비세를 증가시킴으로써 18~20세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를 약 15%까지 감소시킨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높은 주류세와 세금은 대학에서의 낙제, 어린이 학대, 성전염병, 흡연 등을 감소시켜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발견된다. 결론적으로 알코올관련 폐해를 감소시키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정책수단은 조세부과를 통한 가격인상이라 할 수 있다. 4인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와 4인의 전임 미국경제학회장을 포함한 59인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Economists' Declaration on Alcohol Taxes을 통해 주류에 대한 강화된 조세정책을 지지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본문**

13) 납세자가 공공서비스로부터 받은 편익에 비례하도록 조세를 분배하는 원칙을 의미함.

14) The Commonwealth Fund(2009). The Path To A High Performance U.S. Health System: A 2020 Vision and The Policies To Pave The Way.